

# **용어 설명집**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 **세계지식재산기구** : 국제 연합(UN) 전문 기관의 하나로,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의 국제 조약인 파리 협약과 저작권의 2대 조약의 하나인 베른 협약의 사무국을 겸하고, 무체 재산의 중심이 되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의 제정을 추진하는 기구. 1996년 12월에는 이른바 인터넷 저작권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조약 개정안을 채택하여 각국의 비준/가입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새로운 조약은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송신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원천 기술** : 원천 기술(original technology 혹은 proprietary technology)란 특정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기 위한 근간이 되는 기술이다.
- **배타적(Exclusive)** : 다른 것을 제외하고 독점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것을 표시한다. 배타적인 것 「포함적(inclusive)」과 대비된다.
- **존속 기간(存續期間)** :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표현·아이디어 이분론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으며, 부고(訃告)나 축구 경기의 결과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 역시 저작물이 아니다.
- **고도(高度)** : 수준이나 정도 따위가 매우 높거나 뛰어남. 또는 그런 정도.
- **고안(考案)** :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냄. 또는 그 안.
- **공지(公知)** : 세상에 널리 알림
- **양수자(讓受者)** : 재산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사람. (→양도-자)
- **로열티** : 로열티란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가진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말한다. 특허권자의 경우 자신의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를 희망하는 자와 계약하여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특허의 실시허락을 특허 라이선스라고 하고 실시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즉 특허사용료를 로열티라고 한다.
- **출원 공개** : 특허출원 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사회 일반에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 **특허출원서** : 특허출원서란 특허출원을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특허 심사 결과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정하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인에게 특허를 결정하게 된다.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출원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 **일신전속권** : 특정 주체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전속권(享有專屬權) 또는 귀속 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도 하며, 특정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을 행사전속권이라고도 한다. 향유전속권은 양도·상속에 제한받는데, 친권(親權) 및 부부 상호의 권리 등과 같이 양도·상속이 모두 불능한 것과,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민법 449조 2항)처럼 양도만이 불가능하고 상속은 가능한 것이 있다.
- **결합저작물** : 결합저작물은 2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하여 작성된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나, 그 작품 전체의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각자 단독적으로 저작한 것을 단순히 묶어 놓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저작권자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된다.
- **공동저작물** : 결합저작물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2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하여 작성된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저작물'이 된다.
-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입법례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세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소리상표** :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로, 국내에는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소리상표는 저작권과 달리 상표법에 규정된 각 상품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소리상표의 대표적인 사례는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결음이다. 즉, 통신사마다 보유한 고유의 휴대전화 연결음을 다른 통신사가 쓰지 못하는 것은 각 통신사가 소리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대안적인 분쟁 해결책.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직접 협상 또는 제3자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안. 재판 없이 당사자 간 협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우리나라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ADR) 역할을 하는 기구는 특허와 같은 산업 재산권의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 분야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권 분야는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인터넷 도메인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해당된다.
- **상표** :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2조 1항).
- **표장** :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출원가능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이것을 표장이라고 한다.

- **관용상표** :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없게 된 표장이다. 컴퓨터통신업에서 ‘사이버’, 숙박업에서 ‘파크’, 음식점 경영업에서 ‘가든’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 2 이상의 동일한 발명 및 발명아이디어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먼저 발명한 자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선발명주의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2011년 10월 현재 미국(2013년 3월 16일부터 선출원주의 적용 예정)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심미성(審美性)** :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기 위한 설계의 기본 요소 중 하나로, 색상이나 디자인, 외관의 미적 기능을 말한다. 개인주의적 개성 시대인 현대에 중요시되는 요소이다. 개인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주관성이 강하고 시대나 국가, 민족에 따라 다양하며, 문화나 유행에 따라서 심미성의 기준은 유동적이다.
- **청구항(請求項)** : 청구를 통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밝히는 항목.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본 원칙 중 하나다. 해당되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특정되며 해당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여야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칙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본 원칙이다. 만일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균등론에 의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업무상배임죄(業務上背任罪)** :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비밀준수의무** :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 그가 근무했던 사업장 또는 회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진다. 그러나 비밀준수의무의 정도에 대하여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결정해야 할 것이다.
- **NDA 계약서** : 비밀유지계약서. 회사 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사 간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게 되므로 그러한 정보를 서로 제3자에게 노출하지 말자는 약속을 정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워터마크(Watermark)** : 종이, 문서, 그림 등에 위·변조 방지 혹은 저작권 등을 표시하기 위해 삽입한 고유의 표식(表式).

- **전직금지약정** : 경업금지약정.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 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위약금(違約金)** : 계약금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을 말한다.
- **고의** :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 대하는 말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형법 제14조), 고의와 과실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 **과실** : 법률적으로는 어떤 사실(결과)의 발생을 예견(豫見)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고의(故意)와 함께 법률상 비난 가능한 책임조건을 말한다.
- **위탁** : 1.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 2.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 **수탁** : 1.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음. 또는 그런 일. 2.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임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시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행위태양** : 행위의 양태, 행위의 모습을 의미한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기업에서 정보보안 업무에 관련된 총괄책임을 지는 임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내 정보기술 부문의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과 계획 수립, 보안사고 예방 및 조치 등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을 지칭한다.
- **IDC(Internet Data Center)** :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서버를 한 데 모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한다.
- **웹 호스팅(Web hosting)** : 대형 통신업체나 전문회사가 자신들의 웹서버를 개인 또는 개별업체에 제공하거나 임대해 주는 것.
-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 : 각종 자료를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 등 내부 저장공간이 아닌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뒤 다운로드받는 서비스를 말한다.